

서울고등법원 2020. 4. 21 선고 2019나20570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4. 21 선고 2019나2057085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가합105649 판결

전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민경한

변론 종결 2020. 3. 24

판결선 고 2020. 4. 21

제1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가합10564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피고는 원고에게 5,352,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9.부터 이 사건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예비적으로, 피고는 서울 강동구 C 토지 내에 있는 수목을 베어내고 주차장으로 훼손한 것에 대하여 이에 준하는 상태로 원상복구하고,위 토지 내에 있는 지하수 고갈에 대한 것은 이에 준하는 시설로 원상복구하며,위 토지 내에 설치된 정화조 이전에따를 배수설비 설치는 정당한 업자가 시행하여 원상복구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면 제9행의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의 기재"를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 증의 1,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4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 제거와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 설치가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 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을 제2호증의 2(소유주 동의서)에 나타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 중 위 수목 제거와 진입도로 개설 등에 동의한 구분소유자의 수와 그 지분비율을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D상가

현황)의 기재에 따라 산정하면 33명 중 21명(약 64%)과 1232.71분의 889.11(약 72%)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9, 13, 25, 30, 32호 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정비사업 대상 토지로부터 분할되고 그 주위에 가림막이 설치되면서 피고의 정비사업 대상 토지를 통해 이 사건 상가로 연결되는 주차장 출입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 그러자 이 사건 상가의 대표 6명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을 제2호증의 2(소유주 동의 서)를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이른바 '맹지'가 되지 않도록 이 사건 토지 중 공로에 연결되는 부분에 식재된 수목을 제거하고 그 부분에 진입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위 수목을 제거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수목 제거와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 설치하는 토지 분할 및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가림막 설치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낮아진 이 사건 상가의 객관적인 편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구분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비용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로 정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단서 제1호), 위 수목 제거와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 설치하는 그러한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O 제4면 제4행의 "갑 제4호증의 2, 3의 기재"를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20, 21, 2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영재판사 박혜선판사 강경표